

전주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19나47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19나4796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4. 30 선고 2017가단12781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1. 주식회사 A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담당 변호사 남미영, 장영재

피고, 피항소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 변호사 박재형

변론 종결 2020. 12. 23.

판결 선고 2021. 1. 27.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4. 30. 선고 2017가단12781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동산 및 시설물에 관하여 2017.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99,565,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2,042,000원,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게 47,523,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0. 체결된 매매계약과 별지2 목록 기재 각 동산 및 시설물에 관하여 2017.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99,565,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2,042,000원,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게 47,523,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동산 및 시설물에 관하여 2017.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동산 및 시설물을 인도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에 대한 채권

-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3. 11. 20.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종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 A는 위 종돈매매계약에 따라 D에 2013. 11. 30.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합계 378,309,000원 상당의 종돈을 공급하였고, 2015. 12. 15. 현재 미지급 대금은

52,042,000원이다.

○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가 2015. 12.경 위 종돈매매계약상 원고 A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그 후 원고 B는 피고에게 26,773,000원 상당의 종돈을 공급하였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Z 및 2015. 11.경 위 회사를 합병한 원고 B는 2014. 8.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에게 20,750,000원 상당의 종돈을 공급하였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별지2 목록 기재 각 동산 및 시설물에 관한 매매계약

○ D과 그 대표이사 E은 2017. 2. 8.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D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E 소유의 부동산 및 관련한 시설 전부를 80억 원으로 평가하여 F이 장차 설립할 제3회사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 D은 2017. 2. 20.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새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D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을 피고에게 대금 6,552,701,363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D은 2017. 4.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 설립 당시 주식 300,000주(액면가 10,000원)가 발행되었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이 위 주식의 40%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B이 30%를, E이 30%를 각 인수하였다.

○ D은 2017. 4. 20.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D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동산 및 시설물(이하 '이 사건 동산 및 시설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대금 1,447,298,637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D의 채무초과 상태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동산 및 시설물은 D 소유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G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H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요지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이 사건 동산 및 시설물을 매도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피보전채권액 상당의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4. 2017. 2. 20.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제1심판결문 제6쪽 제6행부터 제7쪽 제9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4.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및 2018. 4.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대상을 이 사건 제1매매계약으로 한정하였다가 2018. 1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비로소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대하여도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2017. 10. 24. 피고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사실 및 이에 대한 D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으므로, 위 시점으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갑 제6호증) 상단에 "D과 E 소유의 부동산 및 시설 전부를 제3회사에게 매도하고 제3회사에서는 이를 매수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합의서 제1조 제1항에 "D과

E은 다음 기재 번지의 부동산 및 관련한 시설 전부를 8,000,000,000으로 평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7. 10. 24. 이 사건 소에서 구하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카단2209호), 그 신청서에 위 합의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합의서에서는 매매 목적물 중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경우와 달리 '시설 전부'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시설물 내역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합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로서는 위 시설물 내역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만약 위 시설물 내역을 알고 있었다면 위 가압류 신청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이 사건 동산 및 시설물도 당연히 그 목적물에 포함시켰을 것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만 가압류 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가압류 신청 당시 이 사건 동산 및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시점에 원고들이 이를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이전에 이미 원고 A는 52,042,000원의, 원고 B는 47,523,000원(= 26,773,000원 + 20,750,000원)의 각 물품대금채권을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각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D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

D은 이 사건 합의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바,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동산 및 시설물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D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D은 피고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D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자금유통의 목적에서

체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당심법원의 AC조합, H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D은 유일한 재산이자 사업을 계속함에 있어 필수적인 이 사건 동산 및 시설물을 위 매매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양도한 채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액은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액수임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점, 위 매매대금 중 일부는 E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해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16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의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의 30%를 E이 인수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악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따라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바, 원상회복의 방법과 그 범위에 관하여 본다.

1)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의 G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 및 시설물의 시가감정을

시도한 감정인은 시설 일부가 교체되고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위 동산 및 시설물을 특정할 수 없었다는 의견을 밝혔고,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동산 및 시설물 중 상당 부분이 토지에 부합된 물건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동산 및 시설물은 사회 통념상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가액배상의 범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재산의 가액과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와 D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동산 및 시설물의 매매대금을 1,447,298,637원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 합계액 99,565,000원(= 52,042,000원 + 47,523,000원)을 크게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위 채권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위 99,565,0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2,042,000원,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게 47,523,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르는 원상회복방법과 관련하여 예비적 청구로 원물반환을 구하였으나, 주위적 청구인 가액배상을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조지환

판사나상훈

판사오창민

별지